# 등록무효(특)

[특허법원 2009. 7. 15. 2008허8907]

# 【전문】

# 【원 고】

【피 고】 주식회사 청우식품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환 외 2인)

【변론종결】2009. 6. 10.

#### 【주문】

#### 1

- 1. 특허심판원이 2008. 6. 13. 2007당265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# 【청구취지】주문과 같다.

# [이유]

## 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특허발명

- (1) 발명의 명칭 :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
- (2) 출원일 / 등록일 / 등록번호 : 2006. 8. 4. / 2006. 9. 14. / 제626971호
- (3) 특허권자 : 피고
- (4) 특허청구범위 : 별지 1과 같다.
  - 나. 원고의 영업비밀

#### 별지 2와 같다.

다.

이 사건 심결의 경위

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이고,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있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 판을 청구하였으나,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.

#### 【이유】

### 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특허발명

- (1) 발명의 명칭: 떡을 내장하는 과자 및 그 제조방법
- (2) 출원일 / 등록일 / 등록번호: 2006. 8. 4. / 2006. 9. 14. / 제626971호
- (3) 특허권자 : 피고
- (4) 특허청구범위 : 별지 1과 같다.

나. 원고의 영업비밀

별지 2와 같다.

다.

# 이 사건 심결의 경위

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미완성 발명이고,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불비가 있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 판을 청구하였으나,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